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8 선고 2016가합559006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1. 18.

주 문

1. 피고 A 주식회사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,760,040원 및 그 중 292,874,911원에 대하여는 2016. 5. 23.부터 2016. 11. 16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6. 1. 13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39,517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재판장판사김성수

판사안은진

판사권은석

별지